



회원 이용약관

주식회사 화물맨

(주)화물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화물맨(이하 "회사"라고 함)에 가입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회원"이라고 함)와 회사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회원이란 회사 서비스화면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ID와 Password를 발급받은 회원사(화주,주선사,운송사) 회원, 차주 회원을 말한다.
- ② 화물정보망서비스란 화물배차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③ 정보이용료란 회사의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톤수 및 권역(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동의】

- ① 회사는 모든 회원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서비스화면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 가입신청 시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회사는 개정된 약관 내용을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게시한 후 회원 이시행일 14일 이내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광고성 정보의 제공 및 광고 게재】

- ① 회사는 회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제한 범위 내에서 회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제휴사와 함께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광고성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이메일), DM (우편), SMS(핸드폰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알림 기능(푸시 메시지 등)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광고성 정보의 제공 및 광고 게재는 회원 가입시 마케팅 수신동의를 받고 한다. 단, 미동의시 회원이용제한은 없으나 마케팅 및 이벤트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없다.

(주)화물맨



제5조 【관련 규정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2장 회사의 책임과 의무

제6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 ① 회사는 회원들의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요한 고지 및 통지의 의무를 다한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따른다.
-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화물정보망서비스 정보에 대한 관리의무 등을 준수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한다.
- ④ 가입 시 계약한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또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의 내용을 알리고자 할 때는 개별적으로 전자매체를 통하여 고지한다.

제7조 【회사의 책임 한계】

-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체결되는 운송계약의 당사자 또는 통신판매자가 아니며, 회원이 자율적으로 화물정보를 등록,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한다.
- ② 회사는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 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하지 않는다. 단, 보증은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회사가 필요시 회원에게 화물운송비에 한하여 일정 회비를 받고 책임보증을 할 수 있다.

(주)화물맨



- ③ 회사가 제공하는 화물정보망서비스 및 자료 등을 통해 나타나는 제반 정보들에 관한 확인이나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 각자의 책임이고, 실제 거래 여부에 관한 판단 역시 회원이 직접 결정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는 그 어떤 책임도 없다.
- ④ 회사는 회사가 제공한 화물정보 외에 화물의 운송 중에 발생하는 사고, 운송 화물의 파손이나 도난, 운송비 및 수수료의 결제, 과적 및 운행 법규 위반 등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없다.

제8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제공의 일시 제한과 중지, 면책】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1. 국가비상사태, 정전, 설비장애,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한 경우
2. 화물정보망서비스 시스템의 점검, 보수, 교체 등으로 인한 경우
3. 화물정보망서비스 시스템 관리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4. 기관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5. 기타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6. 회원의 서비스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인 경우
7. 직원의 단체행동,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휴업, 법정관리, 영업정지가처분등소송, 폐업인 경우

제3장 회원의 책임과 의무

제9조 【회원 정보의 변경】

- ① 회원은 회원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회사에 알려 변경된 사항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불이익 및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주)화물맨



제10조 【회원 정보 사항에 대한 동의】

-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회원 가입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 ② 회원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는 것은 제1항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상에 기재된 회원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회원 상호 간 거래 안전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회원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 ③ 회원은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가 발송하는 회사의 정책이나 주요 고지 사항 등을 우편물 또는 핸드폰 문자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한다.
- ④ 운송비 및 기타 수수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원만한 해결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위 1항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 ⑤ 회원은 계약 회원 간의 신뢰를 위하여 본인 차량 및 대여 차량에 대한 위치정보를 계약 회원과 회사가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을 별도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에 의하여 동의한다.

제11조 【회원의 책임과 의무】

-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및 별도 게시 사항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회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관리 소홀, 부정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진다.
- ③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한 화물정보망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회원은 제6조 규정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어떠한 책임을 묻거나 요구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사항은 회원 상호 간에 합의로서 원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은 부칙 제2조[화물정보망서비스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해당 회원을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 ⑥ 회원은 회원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차주,회원사 회원) 욕설이나 폭언을 해서는 안된다.

(주)화물맨



제12조 【회원의 과적 방지 의무】

- ① 회원은 반드시 정확한 화물 중량을 등록하고, 등록된 화물 중량을 확인하여 과적 운송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회원은 법령에 어긋나는 과적 중량을 등록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되고, 과적 운송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되며, 과적 화물을 운송해서도 안된다.
- ③ 위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상호 간에 이루어졌거나, 회원이 일방적으로 한 과적 중량등록 및 과적 운송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 책임이 없다.
- ④ 회원은 회사가 과적 화물등록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차단 또는 등록 거부하거나, 자동으로 최대 적재중량 이하로 표시되게 하는 등 과적 등록을 제한하고 제재를 가하더라도 결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제13조 【회원사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사 회원은 화물정보망서비스에 상차지, 하차지, 운송 품목, 운임을 알려야 하며, 반드시 화물 운송주선업 면허를 보유했을 때만 주선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② 회원사 회원은 화물정보망서비스에서 화물정보를 등록할 당시에 정한 운송비지급약속일을 엄수해야만 한다.
- ③ 회원사 회원은 화물배차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고 수정 사항이 발생 시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허위정보를 등록 또는 배차결정 후 일방적인 취소인 경우 정보이용 정지 또는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 ④ 회원사 회원은 선착불 오더의 경우 차주회원에게 운송료 지급 주체를 명확하게 고지해야하며, 만약 운송료가 미지급되어 차주회원이 운송료 민원처리 요청한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한다. 상호간 위 사항을 준수하였음에도 선착불 오더의 운임이 30일이 경과된 후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오더의 회원사 회원의 주선 수수료는 차주회원에게 반환 해야한다.
- ⑤ 회원사 회원은 배차등록을 협력사 협회에 위임 또는 하청하여서는 안 되고 본인의 배차는 본인의 아이디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단, 주선사는 배차 주선등록은 가능하나, 운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배송 완료 후 신의성실과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해결하여야 한다.

(주)화물맨



- ⑥ 회원사 회원은 운송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운송은 고용산재보험 관련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차주 회원의 의무】

- ① 차주 회원은 화물정보망서비스에서 화물정보를 선택하여 배차받은 후 이를 5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사고, 차량고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한 경우는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차주 회원은 회사에서 제작한 소정 양식의 스티커를 본인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를 사진으로 찍어 회원 가입 후 15일 이내에, 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 ③ 만약, 차주 회원이 15일 이내에 스티커 사진을 발송하지 않거나 스티커를 미 부착한 경우, 회사는 회사가 차주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 및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차주 회원 가운데 정액 정보이용료를 납부하고,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 차주 회원 및 신규 가입 차주 회원은 회사의 전국 각 지부 조직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지부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한다.
- ⑤ 차주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및 각종 혜택을 받으므로 회사의 스티커를 등록일 기준 20일내 본인이 관할구청에 신고 후 부착하여야 한다.
- ⑥ 차주 회원은 운송 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을 가입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15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 ①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자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등록 서류를 제출한 후 회사로부터 회원 가입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주)화물맨



- ② 가입신청자는 부칙 제3조[화물정보망서비스 가입 서류]에 해당하는 자료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입신청 시 1주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미제출 시 제출된 서류는 폐기할 수 있다.
- ③ 가입신청자는 회원 가입 시 부칙 제4조[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동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이 정보이용료를 미납할 경우 회사가 정한 일정 유예기간(7일) 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은 운송에 필요한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예치하고 운송 시 사용하거나 회원 탈퇴 시 출금할 수 있고,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을 회원에게 "예치금 운용 동의"를 받아서 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예치금의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단, 회원이 철회를 요청할 시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을 운용할 수 없다.

제16조 【가입신청에 대한 거절과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입신청에 대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단,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회사의 심사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타인 명의 가입을 회사는 승낙할 수 있다.
 -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3.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제한 및 강제 탈퇴 된 전력이 있는 경우
 - 4. 회원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타인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
 - 5. 기타 가입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가입 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낙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의 해소 시까지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 1.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2.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의 사정상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주)화물맨



제17조 【이용계약 해지 및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된 회원에서 임의 탈퇴할 수 있다.
- ② 단, 운송료 및 수수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민원 정지된 회원의 경우에는 민원 정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임의탈퇴가 불가하고, 제31조 규정에 해당하여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이 제한 중인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임의탈퇴 할 수 있다.
- ③ 임의탈퇴 하는 회원은 반드시 해지 신청서(또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 ④ 만약, 회원이 해지 의사(또는 탈퇴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해지 신청서(또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보이용료가 CMS 출금되었다면 회사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 ⑤ 회원 본인 스스로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통보 후 무기한 이용정지로 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규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및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 등을 비롯한 회사 운영과 화물정보망서비스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회원에게 통고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이용료

제18조 【정보이용료】 회원은 회사의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매월 회원요금제에 따라 정보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9조 【정보이용료 산정】

- ① 정보이용료는 1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 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CMS 출금 회원은 매월 5일 출금된다.
- ③ 2025년 01월 01일 이후 가입한 회원은 최초 정보이용료 납부 일자 기준으로 매월 선납으로 출금되며, 미납 시 미납액을 납부한 일자 기준으로 출금 일이 변경된다.

(주)화물맨



- ④ 일시 정지 및 탈퇴 후 재가입 시 또는 회사의 심사에 통과한 신용불량자의 경우 최초 정보이용료 납부일 기준으로 매월 선납으로 출금된다.

제20조 【정보이용료 납부】

- ① 정보이용료는 선납으로 기존 CMS 납부 회원은 출금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출금되며, 신규 선납 회원은 납부일에 회원의 등록된 은행계좌(CMS), 카드, 예치금계좌에서 자동 인출된다. 회사는 등록된 회원의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② 회원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으로서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CMS 제공 등 금융 거래 정보의 제공과 CMS, 예치금계좌에 의한 자동 출금이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된다.

제21조 【정보이용료 납입책임자】

- ① 정보이용료 납부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단, 회원 이외 별도의 정보이용료 납입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 및 별도의 정보이용료 납입책임자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정보이용료 납부 책임을 진다.
- ② 정보이용료 납입책임자는 회원이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료 납부 등 본 약관에 따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제22조 【불법 면탈된 정보이용료의 징수】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정보이용료의 납부를 불법 면탈한 행위(타인의 접속정보를 사용 또는 공유)를 한 경우, 면탈한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23조 【정보이용료 미납】

- ① 정보이용료는 가입일 기준으로 출금되며, 출금이 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7일) 후 자동 정지된다. 정지 후 회원이 미납된 정보이용료를 입금 할 경우 변경된 입금일 기준으로 출금 일이 변경된다.

(주)화물맨



제24조 【정보이용료 반환】

- ① 회사는 정보이용료가 제20조 규정에 따라 이미 CMS 출금되었음에도 추가 출금되거나, 회원의 무통장입금 등 이유로 추가 납부된 경우 조속한 시일 내 회원에게 반환한다.
- ② 회원은 회사의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 탈퇴할 경우에 선·착불 수수료 예치금 및 가상계좌 예치금이 정보이용료와 무관하여 회사의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스스로 즉시 출금하여 잔액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회사는 회원이 제32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제공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여 민원 정지 등과 같이 화물정보망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정보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④ 회원은 정보이용료 납부 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차 이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이의신청】

- ① 납부 청구된 정보이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보이용료 납부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및 전화 또는 문자 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6조 【인수증 운송료】

- ① 회원사 회원의 인수증 운송료에 대하여 인수증 운송료 미지급 발생 시 배차를 증개한 회원사 회원은 성실히 미지급의 해결 책임을 진다.
- ② 회원사 회원은 차주 회원과의 인수증 운송료 약속일을 정한 날 인수증 운송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기한 초과 후 민원 발생 시 회사는 부칙 제5조[운송료 민원 발생 처리 규정] 제2항에 따라 해당 회원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제6장 이용 제한 및 분쟁

(주)화물맨



제27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의 제한】

- ① 회사는 부칙 제6조[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제한 규정] 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그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함을 안내 후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이용 제한이 가중된다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후, 부칙 제6조[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제한 규정] 의 2배 동안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사유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회사의 사정 및 운영 방침 등을 고려하여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무기한 제한하거나, 강제 탈퇴 조치한다.
- ④ 회원의 행위가 전기통신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정보 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가 모두 해소될 때까지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치는 해당 회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지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⑥ 회사는 회원이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회신 요청 문자에 대해 1일 1회, 주 3회 이상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유선상 통화 전까지 화물배차를 제한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회원의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제한 철회 요청 시, 관련 내용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검토 후 이용정지를 철회할 수 있다.

제28조 【강제 탈퇴】

-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및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탈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회원을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6조 회사의 책임 한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회사에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경우, 해당 회원을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회원이 부칙 제2조[화물정보망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제26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의 제한과 상관없이 해당 회원을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회원이 제27조 제3항에 해당 되는 경우 다른 회원들과의 형평성, 화물정보망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등을 위해 해당 회원을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민원에 의해 서비스 정지 이력이 있는 회원의 정보 일부를 이용하여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주)화물맨



- ⑥ 회사는 회원이 민원에 의해 서비스 정지된 회원의 화물을 대리 등록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 ⑦ 회원은 가입 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임이 적발된 경우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 ⑧ 제11조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 또는 확인 시 소급 적용하여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조치는 해당 회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지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⑩ 강제 탈퇴를 통지받은 해당 회원은 24시간 이내 회사 민원팀에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없이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탈퇴는 확정된다.
- ⑪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최종 통지하고, 최종 통지 결과는 번복하지 못하며, 이후 더 이상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9조 【업무중단권】

- ① 상담사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은 회원으로부터 막말, 욕설, 협박, 성희롱, 반복적인 요구 및 인격침해에 해당하는 모욕적 발언 등 폭언을 듣게 되는 경우, 회원에게 2회 경고 후 즉시 전화를 끊고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상담사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과 회원이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즉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그 자리를 피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회원의 폭언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거나, 반복, 지속해서 행해질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해서 형사 고소 등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제1, 2, 3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 ⑤ 본 규정은 제26조 및 제27조와 별도로 적용한다.

제30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 ① 회사 및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사와 회원 사이에 회비 등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주)화물맨



■ 부칙

제1조 【시행일】

- 본 약관은 2018년 12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본 약관은 2019년 04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약관은 2020년 09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약관은 2023년 05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약관은 2023년 0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약관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약관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약관은 2025년 04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약관은 2025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약관은 2026년 01월 0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화물정보망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

- ①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 및 관계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조직 및 회원을 무단으로 동원하고 활용하거나, 회사에 대한 음해성 발언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 ② 화물정보망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는 등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③ 화물정보망서비스에서 얻은 정보 및 프로그램을 복제, 가공,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 ④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하거나, 법령 위반 또는 직·간접적으로 범죄와 결부되는 행위
- ⑤ 제4항과 같은 내용이나 정보를 화물정보망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⑥ 화물정보망 시스템의 오작동 및 정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화물정보망서비스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

(주)화물맨



- ⑦ 불법 프로그램(일명 지지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거나,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화물정보망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
 - ⑧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도용 또는 대리사용, 임의사용하는 행위
 - ⑨ 회사 상담사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제28조 업무중단권을 발동하고, 동조 제3항 법적조치에 해당할 정도의 폭언을 하는 행위
 - ⑩ 회원사간 채무가 있는 회원사가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송비를 지급할 여력과 의도가 없음에도 배차 등록하여 회사 화물정보망서비스의 거래 안전을 훼손하는 영업방해 행위 단, 회원사가 화물정보망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가해행위의 기준은 3회 이상 운송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또는 그 지급이 지체된 운송 대금의 액수가 1,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가해행위로 본다.
3. 기타 회사 운영 및 화물정보망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3조 【화물정보망서비스 가입 서류】

1. 화물정보망 가입신청서(소정 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실제 납부자 통장 사본(유료 회원 신청시 제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본인확인용)
4. 차주는 차량등록증, 기사 화물운송자격증
5. 주선사는 주선허가증
6. 기타 정보이용료의 할인, 증빙서류 발급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7.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동의 규정】

1. 선·착불 건 주선 수수료 자동 정산 처리 규정 동의(필수)
2. CMS 출금이체 신청 및 동의(필수)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필수)
4. 위치정보 활용 및 회원이용약관에 대한 동의(필수)

(주)화물맨



5. 유의 사항 동의(차주 동의)

제5조 【운송료 민원 발생 처리 규정】

- ① 회사는 인수증 화물에 대한 운송료 미수령 차주 회원의 민원 발생 시 회원사 회원이 제시한 지급 가능 결제일을 차주 회원에게 전달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한다.
- ② 회사는 차주 회원의 미동기가 확인된 날 또는 제①항의 상호 합의한 지급 가능 결제일에 운송료 미지급이 확인된 날로부터 3일 후 회원사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 ③ 회사는 선착불 운송료 미지급으로 민원이 접수된 회원사가 동일한 원화주의 선착불 운송료 관련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될 경우, 마지막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회원사의 선착불 화물 등록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제한 규정】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7일간 제한한다.
 1. 회사 상담사 및 임직원에게 욕설, 협박하거나, 성희롱, 인격 모욕적 발언 및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요구, 막말, 폭언 등을 한 경우
 2. 화물맨 회원으로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하고자 고의로 회원에게 협박과 위협을 등을 한 경우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5일간 제한한다.
 1. 민원 정지된 회원으로 하여금 회원 본인 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을 등록하도록 용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2. 차주 회원이 배차받은 화물정보를 회원사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재배차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회원사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3. 회원사 회원이 차주회원이 상차지 입차 후 또는 현장대기 중임에도 일방적으로 배차를 취소한 경우, 추가로 회원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3일간 제한한다.

(주)화물맨



1. 회원이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회사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CMS 출금 신청 계좌를 변경하거나, 통장 거래를 해지한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3. 회사 지부 모임을 방해하거나 지부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지부의 유일한 공식조직을 회사와 무관한 임의 단체화하거나 사조직화하는 회원과 이에 가입한 회원
 4. 화물정보망 사업에 장애가 되는 등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불법성 있는 소그룹 운영 및 이에 가입하는 경우
 5. 예약 화물정보를 배차받은 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분이 지난 이후에 철회한 경우
 6. 상·하차지에서 영업 행위를 하거나 업무방해 행위 및 소란한 행위를 한 경우
 7. 차주 회원이 배차받은 화물정보를 회원사 회원의 동의 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재배차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 ④ 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1일간 제한한다.
1. 운송료가 현저하게 저가이거나 저가 운송료 등록이 과도하게 반복되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민원이 3회이상 제기되는 경우
 2. 상·하차지에서 영업 행위를 하거나 업무방해 행위 및 소란한 행위로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화물정보를 배차받은 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분이 지난 이후에 철회하거나, 부당하게 회차한 경우
 4. 어플리케이션에 차량 판매, 기사 구함, 항의, 욕설 등 배차 받을 수 있는 화물정보 외 다른 내용을 등록하거나 사업적, 불법적, 정치적 광고성 내용을 지속해서 전송하는 경우
 5. 차주 회원의 불성실한 운송으로 정확한 상하차지에 화물배송이 안될 경우, 화주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이유없이 추가운임을 요구하는 경우, 협력사 회원이 차주 회원에게 화물정보와 다르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 ⑤ 회사는 부칙 제5조 운송료 미지급 또는 수수료 미지급 발생시 다음 각호와 같이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등급변경을 할 수 있다.
1. 인수증 운송료 및 선착불운송료 미지급시
민원 1회 접수 : 지급 가능 결제일 최종 통보
민원 2회 접수 : 인수증의 경우, 당일24시까지 입금, 통보 및 미결제시 이용정지에 관한 사항 안내

(주)화물맨



선착불의 경우, 회원등급종정에 관한 사항 안내

민원 3회 접수 : 인수증의 경우, 이용정지, 지급시까지 이용정지 안내

선착불의 경우, 회원등급 조정, 지급시 등급조정 해제 안내, 화물등록 서비스 이용 제한

2. 선착불 수수료 미지급시

민원1회접수:약관 제12조 제4항 안내, 1차 수수료 환급 요청

민원2회접수:약관 제12조 제4항 안내, 2차 수수료 환급 요청

민원3회 접수:등급변경, 변경사항 통보 및 3차 수수료 환급 요청

3. 운송료 이중 입금

협력사 회원이 차주 회원에게 운송료를 이중 입금한 경우로, 이중 입금된 운송비 확인 후 결제일을 협의확정하고 협의된 결제일에 미지급시 결제완료시까지 민원 정지

(주)화물맨